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3
----------	------

2018. 6.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5. 31.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8. 6. 11.
4. 상정일자 : 제281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II. 제안설명 (재무국장 : 하철승)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예산액은 2,089억원이고, 이 중 14건, 104억 6천만을 지출결정하여 1,357억원을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천만원임
-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총 1,740억원이며, 이 중 11건 45억원을 지출결정하여 43억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억원임
-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22억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변 사고 손해배상 5억원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원을 편성하여, 3건 59억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음
- 주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서울역 고가공원 추가공사비 지급 50억원과 은평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6억원 등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개요

- 예비비는 당초 2,088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104억 6,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02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2-2〉 예비비 지출 결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소계	208,874	10,461	10,227	0	234
일반회계	174,015	4,547	4,313	0	234
특별회계	34,858	5,913	5,913	0	0

2. 검토요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1)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바
 - 「지방재정법」 제43조1항2)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결산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결과에 대해 별도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3)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4)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1,755억 200만원⁵⁾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1,740억 1,600만원으로⁶⁾ 조정한 바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예비비 2,088억 7,400만원에 대해 통계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 제43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17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 : 일반예비비 1,555억 200만원, 목적예비비 200억원

6)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 : 일반예비비 1,540억 1,600만원, 목적예비비 200억원

목 기준 14건, 104억 6,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02억 2,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1,740억 1,600만원중 11건, 45억 4,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3억 1,300만원을 지출한 것임

〈표 7-1〉 예비비 지출현황 ('17~'14)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2017	소계	208,874	10,462	10,227	0	234
	일반회계	174,016	4,548	4,313	0	234
	특별회계 ^{주1)}	34,858	5,914	5,914	0	0
2016	소계	192,210	135,902	135,654	0	249
	일반회계	152,030	129,230	128,982	0	248
	특별회계	40,180	6,673	6,672	0	1
2015	소계	185,599	110,197	108,198	0	1,999
	일반회계	156,944	97,537	95,557	0	1,980
	특별회계	28,655	12,660	12,641	0	19
2014	소계	175,605	29,852	28,632	0	1,220
	일반회계	130,951	27,884	26,665	0	1,219
	특별회계	44,654	1,968	1,967	0	1

주1) '17회계연도의 경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9개), 공기업특별회계(1개) 포함

○ 예비비의 편성취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바

- 지난 '16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1,520억 3,000만원)중 71.5%, 1,087억 3,300만원이 소송과 관련된 지출이었으나 '17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1,740억 1,600만원)중 5건, 36억 9,200만원이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결정건으로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예비비 지출규모가 감소된 것은 물론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합목적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소관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의 경우, 시민안전, 서울메트로 요청, 시민편의 제공 등의 사유⁷⁾로 예비비 49억 9,000만원이 사용승인 통보⁸⁾ 된 바

-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추가 공사 등을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출결정된 예비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그러나 서울로운영단이 제출한 공사일보⁹⁾ 등을 검토하면 예산총괄부서가 서울로운영단으로 예비비(49억 9,000만원)를 사용승인통보한 시점('17.12.15)이후 예비비 지출 사유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동 예비비와 관련된 건별·공사일자별 세부내역

7) 서울로운영단-5257 ('17.11.21), “서울로 7017 프로젝트 현안보고”

① 시민안전 : 하부 투척방지 난간하부 보강, 지상연장구간 및 광장 난간 교체 등

② 서울메트로 요청 : 지하철 4호선 안전 확보를 위한 터널계측 추가

③ 시민편의 제공 : 여름철 그늘막, 안개분수, 편의시설 인테리어 추가 등

8) 예산담당관-14502 ('17.12.15),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

9) 서울로운영단-3721 ('18. 4.11) 2017년 12월15일~12월26일까지의 공사일보

도 예비비가 사용승인 통보된 시점('17.12.15)이전인 '17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¹⁰⁾

- 따라서 예비비의 편성취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부족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닌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여 사후정산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 「지방회계법」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¹¹⁾ 예비비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관련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후정산을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예비비의 편성취지에 부합된 지출사례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반적인 소요재원 부족분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는 사례도 있는 바

-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회계연도중 발생한 부족재원을 회계연

10) 서울로운영단-5674 ('18. 6. 1) "17회계연도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 관련한 예비비(49억 9,000만원)중 건별, 공사일자별 세부내역"

11)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 종료에 임박하여 예비비로 사후정산 하는 것은 예비비의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7-2〉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주1)}
계	10,462	(100.0)	10,227	234	14
기 획 조 정 실	2,164	20.68	2,164	0	1
행 정 국	181	1.73	159	22	3
시 민 건 강 국	216	2.06	216	0	1
안 전 총 괄 본 부	411	3.93	410	1	2
도 시 재 생 본 부	635	6.07	634	0	1
주 택 건 축 국	427	4.08	216	211	1
푸 른 도 시 국	5,279	50.46	5,279	0	2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227	2.17	227	0	1
한 강 사 업 본 부	922	8.81	922	0	2

※ 주1) 통계목 기준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호	2493
-----------	------

제출년월일 :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2,088억 7,400만원 중 104억 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2억 2,7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740억 1,600만원
- 지출결정액	45억 4,800만원
- 지출액	43억 1,4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 3,4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67억 3,800만원
- 지출결정액	0원
- 지출액	0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281억 2,100만원
- 지출결정액	59억 1,400만원
- 지출액	59억 1,4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비 사용명세서

일반회계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액 ㉒	지출액 ㉓	이월액 ㉔	집행잔액 ㉕-㉖-㉗-㉘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합 계				4,547,756,000	4,314,194,120	4,313,489,120		234,266,88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일반행정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2,163,815,000	2,163,815,000	2,163,815,000			2017-12-21	2017-12-29	공익사업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패소 판결금관련 예비비 사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소송판결금 지급	배상금등	215,762,000	215,761,390	215,761,390		610	2017-05-16	2017-05-19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사·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7,000,000	4,860,000	4,860,000		2,140,000	2017-01-26	2017-02-08	시 관련 가금류 구매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4,519,000	14,519,000	14,519,000			2017-03-29	2017-03-31	시의원 보궐선거(구로구 제3선거구) 선거비용 납부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59,585,000	139,660,090	139,660,090		19,924,910	2017-06-20	2017-06-26	'17년 시의원 보궐선거(구로구 제3선거구) 후보자 보전비용 납부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방재·민방위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	20,000,000	20,000,000	19,295,000		705,000	2017-11-27	2017-11-27	지진안전점검단 운영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배상금등	391,000,000	391,000,000	391,000,000			2017-04-17	2017-04-17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427,139,000	215,644,000	215,644,000		211,495,000	2017-12-14	2017-12-15	주거급여 부족예산(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로	용허리공원빗물저류 조설치공사 공사대금지급(민사소)	배상금등	227,107,000	227,106,410	227,106,410		590	2017-02-13	2017-02-14	용허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공사대금 지급 건
환경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소송비용	배상금등	453,047,000	453,046,330	453,046,330		670	2017-02-13	2017-02-14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환경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소송 관련 비용	배상금등	468,782,000	468,781,900	468,781,900		100	2017-03-27	2017-03-28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합 계				634,539,000	634,409,100	634,409,100		129,9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역및도시	소송비용	배상금등	634,539,000	634,409,100	634,409,100		129,900	2017-10-17	2017-10-20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은평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합 계				5,279,404,000	5,279,403,300	5,279,403,300		7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소송비용 등(도시개발)	배상금등	289,116,000	289,115,300	289,115,300		700	2017-10-16	2017-10-18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도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시설비	4,990,288,000	4,990,288,000	4,990,288,000			2017-12-14	2017-12-22	서울역 고가공원의 추가공사에 따른 시급한 사업비 확보